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4. 2. 22. 규정 제903호

1. 개정이유

-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의 기준을 보완하여 심사 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임용 실적과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 재임용 심사 기준 중 하나로 산학협력 실적을 추가하고 해당 실적의 인정 범위를 본교와 관련된 것으로 명시
- 심사 평정표의 연구 및 창작활동 영역과 학생지도활동 영역 평가에서 분야별 평점항목을 구체화(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불 입 : 일부개정(안)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문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다음과” 를 “**다음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별지 1호 서식” 을 “**별지 서식**” 으로, 같은 조 제2호의 “**임용기간내의 논문등**” 을 “**임용기간 내의 논문 등**” 으로,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다음**” 을 “**다음 각 호의**” 로, “**별표1**” 을 “**별지 서식**” 으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본교와 관련된 산학협력 실적.

제4조제1항 중 “제2조 제2호” 를 “제2조제2호” 로, “**의거**” 를 “**따라**” 로,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를 “**별지 서식을**” 로 한다.

제6조 “**재임용심사평정표는**” 을 “**교무처장은 재임용심사평정표와**” 로, “**인사위원회**” 를 “**대학인사위원회**” 로 한다.

부 칙 (제903호, 2024.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중 “[**별지 1**]” 를 “[**별지 서식**]” 으로 하고, “재임용 심사 평정표” 에서 “2. 연구 및 창작활동” 평점항목 “④ 학회활동” 에 “(체육관련단체 활동, 산학협력 활동 포함)” 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3. 학생 지도 활동” 평점항목 ①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 능력과 실적(전문실기분야)**” 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과 실적(전문실기분야, 연구중점분야)로 하고, “**산학협력 이행을 위한 능력과 실적(산학협력중점분야)**” 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평정대상자	직위 : 직급 : 성명 :	확인자			(인)	점			
		평정자					(인)	점	
구분 영역	평점항목	배점			실적 및 의견	배점			비고
		A	B	C		A	B	C	
2. 연구 및 창작 활동	① 연구실적물의 양	25	20	15					
	② 연구실적물의 질	10	8				*	*	
	③ 창작활동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	5	3	2					
	④ 학회활동(체육관련단체 활동, 산학협력 활동 포함)	5	3				*	*	
3. 학생 지도 활동	① 학생생활 지도실적 (이론분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 ^과 실적 (전문실기분야, 연구중점분야) 산학협력 이행을 위한 능력 ^과 실적 (산학협력중점분야)	10	8	5					
	②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5	3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심사자료)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임용 심사평정표 (별지 1호 서식) 2. 임용기간내의 논문등 연구실적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p>제2조(심사자료)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별지 서식) 2. <u>임용기간 내의 논문 등</u> ----- 3. <u>그 밖에</u> ----- 																																																																																																																																																																								
<p>제3조(심사기준) 재임용 심사는 당해 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 중에 <u>다음</u>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평정항목별 평정기준은 <u>별표1</u>과 같이 한다.</p> <p>1.~ 4. (생략)</p> <p><신 설></p>	<p>제3조(심사기준) ----- -----<u>다음 각 호의</u>----- -----<u>별지 서식</u>----- -----.</p> <p>1.~ 4. (현행과 같음)</p> <p>5. <u>본교와 관련된 산학협력 실적</u></p>																																																																																																																																																																								
<p>제4조(재임용 심사평정표) ① 재임용심사평정은 <u>제2조 제2호</u> 및 제3호의 심사자료에 의한 객관적 근거에 <u>의거</u> 교무처장이 <u>별지 1호 서식에 의거</u> 작성하고 총장이 최종 확인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재임용 심사평정표) ① ----- <u>제2조제2호</u> ----- -----<u>따라</u>-----<u>별지 서식을</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평정표 제출 및 심의) <u>재임용심사평정표</u>는 연구실적등 심사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u>인사위원회</u>에 심의 요청한다.</p>	<p>제6조(평정표 제출 및 심의) <u>교무처장은 재임용심사평정표와</u>----- ----- <u>대학인사위원회</u>-----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903호, 2024.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지 1]</p> <p>재임용 심사 평정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평정 대상자</th> <th rowspan="2">직위 : 직급 : 성 명 :</th> <th colspan="3">배 점</th> <th rowspan="2"></th> </tr> <tr> <th>A</th> <th>B</th> <th>C</th> </tr> </thead> <tbody> <tr> <td>구분 영역</td> <td>평 점 항 목</td> <td colspan="3"></td> <td></td> </tr> <tr> <td rowspan="2">1. 교육</td> <td>①수업 이행실태 및 근무 상황</td> <td>15</td> <td>13</td> <td>10</td> <td></td> </tr> <tr> <td>①연구실적물의 양</td> <td>25</td> <td>20</td> <td>15</td> <td></td> </tr> <tr> <td rowspan="3">2. 연구 및 창작 활동</td> <td>②연구실적물의 질</td> <td>10</td> <td>8</td> <td></td> <td></td> </tr> <tr> <td>③창작활동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td> <td>5</td> <td>3</td> <td>2</td> <td></td> </tr> <tr> <td>④<u>학회활동</u></td> <td>5</td> <td>3</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3. 학생 지도 활동</td> <td>학생생활 지도실적 (이론분야)</td> <td></td> <td></td> <td></td> <td rowspan="2">(생략)</td> </tr> <tr> <td>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 실적 (전문실기분야) <신 설></td> <td>10</td> <td>8</td> <td>5</td> </tr> <tr> <td rowspan="5">4. 기타 사항</td> <td>②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td> <td>5</td> <td>3</td> <td>2</td> <td></td> </tr> <tr> <td>①학위소지</td> <td>5</td> <td>3</td> <td>2</td> <td></td> </tr> <tr> <td>②교원으로서의 품위</td> <td>5</td> <td>3</td> <td></td> <td></td> </tr> <tr> <td>③학내 인화 관계</td> <td>5</td> <td>3</td> <td></td> <td></td> </tr> <tr> <td>④대학발전을 위한 기여 및 봉사</td> <td>5</td> <td>3</td> <td></td> <td></td> </tr> <tr> <td></td> <td>⑤상 별</td> <td>5</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평정 대상자	직위 : 직급 : 성 명 :	배 점				A	B	C	구분 영역	평 점 항 목					1. 교육	①수업 이행실태 및 근무 상황	15	13	10		①연구실적물의 양	25	20	15		2. 연구 및 창작 활동	②연구실적물의 질	10	8			③창작활동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	5	3	2		④ <u>학회활동</u>	5	3			3. 학생 지도 활동	학생생활 지도실적 (이론분야)				(생략)	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 실적 (전문실기분야) <신 설>	10	8	5	4. 기타 사항	②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5	3	2		①학위소지	5	3	2		②교원으로서의 품위	5	3			③학내 인화 관계	5	3			④대학발전을 위한 기여 및 봉사	5	3				⑤상 별	5				<p>[별지 서식]</p> <p>재임용 심사 평정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평정 대상자</th> <th rowspan="2">직위 : 직급 : 성 명 :</th> <th colspan="3">배 점</th> <th rowspan="2"></th> </tr> <tr> <th>A</th> <th>B</th> <th>C</th> </tr> </thead> <tbody> <tr> <td>구분 영역</td> <td>평 점 항 목</td> <td colspan="3"></td> <td></td> </tr> <tr> <td rowspan="2">1. 교육</td> <td>①수업 이행실태 및 근무 상황</td> <td>15</td> <td>13</td> <td>10</td> <td></td> </tr> <tr> <td>①연구실적물의 양</td> <td>25</td> <td>20</td> <td>15</td> <td></td> </tr> <tr> <td rowspan="4">2. 연구 및 창작 활동</td> <td>② 연구실적물의 질</td> <td>10</td> <td>8</td> <td></td> <td></td> </tr> <tr> <td>③창작활동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td> <td>5</td> <td>3</td> <td>2</td> <td></td> </tr> <tr> <td>④<u>학회활동(체육관련 단체 활동, 산학협력 활동 포함)</u></td> <td>5</td> <td>3</td> <td></td> <td></td> </tr> <tr> <td>3. 학생 지도 활동</td> <td>① 학생생활 지도실적 (이론분야)</td> <td></td> <td></td> <td></td> <td rowspan="2">(생략)</td> </tr> <tr> <td>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 과 실적 (전문실기분야, <u>연구 중점분야</u>) <u>산학협력 이행을 위한 능력과 실적 (산학협력중점분야)</u></td> <td>10</td> <td>8</td> <td>5</td> </tr> <tr> <td rowspan="5">4. 기타 사항</td> <td>②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td> <td>5</td> <td>3</td> <td>2</td> <td></td> </tr> <tr> <td>①학위소지</td> <td>5</td> <td>3</td> <td>2</td> <td></td> </tr> <tr> <td>②교원으로서의 품위</td> <td>5</td> <td>3</td> <td></td> <td></td> </tr> <tr> <td>③학내 인화 관계</td> <td>5</td> <td>3</td> <td></td> <td></td> </tr> <tr> <td>④대학발전을 위한 기여 및 봉사</td> <td>5</td> <td>3</td> <td></td> <td></td> </tr> <tr> <td></td> <td>⑤상 별</td> <td>5</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평정 대상자	직위 : 직급 : 성 명 :	배 점				A	B	C	구분 영역	평 점 항 목					1. 교육	①수업 이행실태 및 근무 상황	15	13	10		①연구실적물의 양	25	20	15		2. 연구 및 창작 활동	② 연구실적물의 질	10	8			③창작활동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	5	3	2		④ <u>학회활동(체육관련 단체 활동, 산학협력 활동 포함)</u>	5	3			3. 학생 지도 활동	① 학생생활 지도실적 (이론분야)				(생략)	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 과 실적 (전문실기분야, <u>연구 중점분야</u>) <u>산학협력 이행을 위한 능력과 실적 (산학협력중점분야)</u>	10	8	5	4. 기타 사항	②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5	3	2		①학위소지	5	3	2		②교원으로서의 품위	5	3			③학내 인화 관계	5	3			④대학발전을 위한 기여 및 봉사	5	3				⑤상 별	5			
평정 대상자			직위 : 직급 : 성 명 :	배 점																																																																																																																																																																					
	A	B		C																																																																																																																																																																					
구분 영역	평 점 항 목																																																																																																																																																																								
1. 교육	①수업 이행실태 및 근무 상황	15	13	10																																																																																																																																																																					
	①연구실적물의 양	25	20	15																																																																																																																																																																					
2. 연구 및 창작 활동	②연구실적물의 질	10	8																																																																																																																																																																						
	③창작활동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	5	3	2																																																																																																																																																																					
	④ <u>학회활동</u>	5	3																																																																																																																																																																						
3. 학생 지도 활동	학생생활 지도실적 (이론분야)				(생략)																																																																																																																																																																				
	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 실적 (전문실기분야) <신 설>	10	8	5																																																																																																																																																																					
4. 기타 사항	②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5	3	2																																																																																																																																																																					
	①학위소지	5	3	2																																																																																																																																																																					
	②교원으로서의 품위	5	3																																																																																																																																																																						
	③학내 인화 관계	5	3																																																																																																																																																																						
	④대학발전을 위한 기여 및 봉사	5	3																																																																																																																																																																						
	⑤상 별	5																																																																																																																																																																							
평정 대상자	직위 : 직급 : 성 명 :	배 점																																																																																																																																																																							
		A	B	C																																																																																																																																																																					
구분 영역	평 점 항 목																																																																																																																																																																								
1. 교육	①수업 이행실태 및 근무 상황	15	13	10																																																																																																																																																																					
	①연구실적물의 양	25	20	15																																																																																																																																																																					
2. 연구 및 창작 활동	② 연구실적물의 질	10	8																																																																																																																																																																						
	③창작활동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	5	3	2																																																																																																																																																																					
	④ <u>학회활동(체육관련 단체 활동, 산학협력 활동 포함)</u>	5	3																																																																																																																																																																						
	3. 학생 지도 활동	① 학생생활 지도실적 (이론분야)				(생략)																																																																																																																																																																			
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 과 실적 (전문실기분야, <u>연구 중점분야</u>) <u>산학협력 이행을 위한 능력과 실적 (산학협력중점분야)</u>	10	8	5																																																																																																																																																																						
4. 기타 사항	②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5	3	2																																																																																																																																																																					
	①학위소지	5	3	2																																																																																																																																																																					
	②교원으로서의 품위	5	3																																																																																																																																																																						
	③학내 인화 관계	5	3																																																																																																																																																																						
	④대학발전을 위한 기여 및 봉사	5	3																																																																																																																																																																						
	⑤상 별	5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나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